



건설교통부, 구조조정 제도개선 방안 마련

10억원 미만 공사 적격심사 개선

건설교통부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 사무실 보유요건을 신설하고 기술자 보유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증능력 요건도 신설하여 건설업체의 자본 형식화로 인한 발주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보증능력 요건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며, 1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시 시공경험평가 제외 대상공사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금년 안에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 [편집자註]

건설교통부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사무실 보유요건을 신설하여 직원의 근무공간과 설계도서의 보관, 입찰내역서 산출, 수주활동 등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게 할 방침이다. 또 토목, 건축 단일업종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모두 5명으로 강화하고 전문건설업종도 기술자 1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보증능력 요건을 신설하여 건설업 등록시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건축업종의 경우 자본금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1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

제도를 개선하여 적격심사시 시공경험평가 제외 대상공사를 축소하고 그 규모를 7억원과 5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시공실적도 종전 폐지 전과 같이 시공경험을 최소한 8점 평가해 반영하는 방안 등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방안을 공청회에 부쳐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의 「건설산업 구조조정 방안」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등록기준 강화

[1] 사무실 보유 요건 신설

사무실 보유 요건은 규모 기준 없이 사무

실 보유만 부여하는 방안, 최소 사무실 보유기준을 일반과 전문으로 구분해 일반 33㎡, 전문 15㎡로 설정하는 방안, 법정 인원수에 1인당 면적기준을 곱해 산정하는 방안, 지난 1989년 폐지 당시의 사무실 규정을 환원하는 방안 등 모두 4개의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중 법정 인원수에 1인당 면적기준을 곱해 산정하는 방안은 토건업, 산업설비업은 $77\text{㎡} \div 2 = 39\text{㎡}$ (11인 \times 7㎡, 경력임원 1인, 기술자 10인)가 되고, 토목·건축·조경공사업은 $28\text{㎡} \div 2 = 15\text{㎡}$ (4인 \times 7㎡, 경력임원 1인, 기술자 3인)가 된다.

또 지난 1989년 폐지 당시의 사무실 규정을 환원하는 방안은 토건 100㎡, 토목·건축·조경 등 80㎡, 전문 30㎡ 등이다.

[2] 토목, 건축 단일업종의 기술자 보유기준

공사수주와 시공활동에 필요한 기술자 수를 산정하되 연간 공사수주액을 감안해 현행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토목 업종과 건축 업종을 동시에 보유할 경우 토건의 등록기준의 2분 1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결과 토목은 4인에서 5인으로 1인이 증원되고, 건축은 3인에서 5인으로 2인이 증원하게 된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 기술자가 현장소장 등 토목시공 기술자 2인, 품질·관리, 측량기술자 등 2인, 입찰전적·공무인력 1인이라고 보고 최소한 이들을 갖추게 했다.

전문건설업종은 기술자 1인 정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3] 자본금 증액·보증능력 요건 신설

건축 업종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려 5층 이하 주택건설만 시공할 수 있는 주택사업등록자와 함께 할 방침이다.

보증능력 요건 신설 방안은 건설업 등록시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과 연간 최저 공사 실적액인 토건·산업설비 6억원, 토목·건축·조경 2억5천만원 등 두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중 2안은 자본금의 일정금액을 금융기관 예치증명서로 제출하게 하는 방안이다. 토건·산업설비 3억

4천만원, 토목·건축·조경 등은 1억7천만원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업체의 1사당 평균 총자본금 17억4천만원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20% 수준이다.

10억 미만 공사 낙찰제도

[1] 대상공사 축소

적격심사시 시공경험평가 제외 대상공사를 축소하되 그 규모를 7억원과 5억원으로 검토하고, 5억원으로 축소할 경우 업체의 충격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축소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공경험을 평가하는 방안에 대해 현행 50억원 수준의 시공경험을 평가하는 방안과 10억원에서 축소된 공사에 대해 별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7억원으로 축소시 건수의 5.4%, 금액 외 23.7%밖에 감소되지 않으나 5억원으로 축소시 건수의 11.3%, 금액은 41.7%가 축소될 전망이다.

[2] 시공실적 평가 방안

종전 폐지하기 이전과 같이 시공경험을 최소한 8점 평가해 반영하는 방안과 현행 50억원 미만 공사와 같이 시공경험을 15점 수준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평가방법을 현행 50억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저낙찰율은 87.75%에서 86.75%로 축소된다. 평가방법을 별도 신설할 경우 낙찰율은 87% 수준으로 현행 10억원보다는 적고 50억원 수준보다는 낮게 된다.

내역입찰제 실시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1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내역입찰제를 실시하고 현장 설명 청취를 의무화하면 기술자를 형식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견적능력이 없는 업체의 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입찰보증금 면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현재 입찰보증금(입찰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면제대상을 건설업 영위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와 1년 미만도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3년으로 연장하여 무모한 입찰참여를 배제한다는 방안이다.